



제 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272호)

2024. 1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전완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김예지의의원 등 12인
2. 발 의 일: 2024. 8. 28.
3. 회 부 일: 2024. 8.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경우 주요 스포츠 경기와 비교해 적은 방송 횟수, 불리한 방송 시간대 편성 등으로 인지도와 접근성이 떨어짐. 이 같은 이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이 일반인과 동등한 수준의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지원과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를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Ⅲ. 검토의견

1.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가. 개정안의 요지

개정안은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 신설).

[개정안 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8조의4(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국가·지자체에게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 수립·시행 시 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제공 노력 및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을 위한 지원 노력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¹⁾

그러나 장애인스포츠 방송이 적은 편성횟수, 불리한 편성시간대 등으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바, 개정안은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방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장애인방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²⁾

1)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이 관련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방송법」 제69조(방송프로그램의 편성등)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을 하는 데 필요한 경비 및 장애인방송을 시청하기 위한 수신기의 보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 2013. 3. 23., 2014. 5. 28., 2016. 2. 3.>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정보통신·의사소통 등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④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예산사업으로 KPC-TV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각종 장애인스포츠대회의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 영상 제공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타당해보임.

[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 관련 지원 사업 현황

구분	내 용
사업명	‘장애인체육 인터넷TV 운영’(내내역사업)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5561-301)’ 내역사업: ‘장애인 생활체육 인식개선 및 홍보’
사업목적	장애인스포츠 대회 중계를 통해 국민 알권리 보장,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도모
집행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24년도 예산	385백만원 - 중계 제작 용역 등 320백만원 - 인건비(임금, 고용부담금 등) 32백만원 - 기타 사업 추진비(차량 임차, 업무협의 등) 33백만원
지원내용	(인터넷 TV 중계) 국내 장애인스포츠 대회 중계(60회) - KPC TV홈페이지 운영: www.kpc-tv.kr - 생중계매체: 4개(KPC TV, 유튜브, 페이스북, 네이버) * 케이블TV 통해 녹화중계 병행(회당 중계단가 약 5백만원) - 홈페이지 통해 경기 생중계 및 하이라이트 영상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종목·다양한 대회 중계 진행(국내종합대회, 종목별 대회 등) - 지상파 및 케이블 유관 방송사 연계 중계(KBS, 복지TV 등) - 홈페이지 유지보수 및 서버 이관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제작물 또는 서비스를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 시청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구분	내 용	
중계 현황	일자	대회명
	4.20.(토)	제2회 폐퍼저축은행배 전국장애인양궁대회
	4.21.(일)	제3회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배 좌식배구대회
	5.15.(수)~5.17.(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4종목
	5.20.(월)	제21회 전국농아인체육대회 *개회식·볼링
	6.15.(토)	파리패럴림픽페스티벌(3X3 휠체어농구)
	6.16.(일)	제3회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축전 *2종목
	6.18.(화)	제8회 부안붉은노을배 전국보치아선수권대회
	6.20.(토)	제9회 세종시장배 전국휠체어펜싱선수권대회
	8. 3.(토)	2024 총주탄금호 전국장애인조정대회
	8. 4.(일)	제7회 경기도지사배 전국장애인배드민턴선수권대회
	8.28.(수)	2024년추계전국장애인역도대회
	9.29.(일)	제3회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골볼
	10. 9.(수)	2024휠체어테니스리그
	10.12.(토)	2024휠체어럭비리그
	10.16.(수)	2024 (주)하이코어배 코리아휠체어믹스더블컬링리그
	10.25.(금)~10.30.(수)	제44회전국장애인체육대회 *24종목 생중계, 7종목 VOD 제작, 폐회식 중계
	11.24.(일) (예정)	2024년전국좌식배구리그
	11.24.(일) (예정)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다만, 현행법 제18조의3에서 유사한 취지에서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규정을 이미 두고 있는바³⁾, 개정안처럼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는 대신 현행 조문(제18조의3)에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추가하여 ‘스포츠관람권 보장’과 함께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겠음.

참고로,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및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권 등의 향상을 내용으로 하는 「스포츠기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3)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표] 관련 유사 법률안

법률안	신설 내용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1)	제17조의2(스포츠 방송에 관한 시책) ①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스포츠 방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스포츠 방송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u>스포츠산업진흥법</u> <u>일부개정법률안</u> <u>(의안번호</u> <u>2203272)</u>	제18조의4(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3)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6. 장애인 스포츠관람권 및 스포츠시청권 보장

문 의 처

02)6788-5375